

광주광역시서구화정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증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00. 12. 8.
- 나. 회부일자 : 2000. 12. 11.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0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사회도시위원회(2000. 12. 29)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자 : 사회복지과장 이 현 숙)

가. 개정이유

- 「2000년도 지방자치단체 규제정비 지침」에서 주민생활에 불편·부담을 주고 있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내용을 폐지, 완화토록 함에 따라 현행 화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중 일부 불합리한 점을 정비하여 운영의 적정성 및 내실화를 기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사용료 면제대상자 중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로 변경 (안 제6조)
- 복지센터 이용제한 사항 중 규정이 모호한 사항은 폐지하고 전염성질환 및 정신질환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변경 (안 제7조)
- 시설물 등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수탁자가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액을 변상토록 함은 위·수탁 협약에 규정한 사항으로 폐지 (안 제1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 화 순)

- 본 조례개정안은 행정규제 정비 계획에 따라 주민생활에 불편·부담을 주고 있는 불합리한 내용을 정비하여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 복지센터는 지역사회의 특수성과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전문성 있는 인력 배치로 복지센터를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임.

그러나 조례안 제7조 2호의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와 3호의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자, 4호의 기타 구청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사용제한은 외관상 판단이 어려우므로 행정규제 정비차원에서 삭제하여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복지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복지센터로서의 제구실을 다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였음.

- 본 조례안 제6조제2항 1호의 복지센터를 이용하는 자에 대한 사용료 면제대상자 중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로 개정은 2000. 10. 1일자 생활보호법이 폐지됨과 동시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신설됨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임.

- 조례안 제12조에 복지센터 사용중 시설물 등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수탁자가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액을 변상하여야 한다는 변 상책임 조항은 협약서와 중복된 내용이어서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규제 정비 차원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이로 인해서 복지센터의 운영·관리 및 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이 소홀히 되어서는 안 될 것임.

따라서 협약서 상에 규정된 내용이 준수되도록 보다 더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8. 기타사항 : 없음

광주광역시서구화정복지센터설치및운용조례증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00년 12월 일
 제출자 : 광주광역시서구청장

1. 개정이유

- 「2000년도 지방자치단체 규제정비지침」에서 주민생활에 불편·부담을 주고 있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내용을 폐지, 완화토록 함에 따라 현행 화정복지센터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일부 불합리한 점을 정비하여 운영의 적절성 및 내실화를 기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사용료 면제대상자 중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로 변경(안 제6조)
- 복지센터 이용제한 사항 중 규정이 모호한 사항은 폐지하고 전염성질환 및 정신질환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변경 (안 제7조)
- 시설물 등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수탁자가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액을 변상토록 함은 위수탁 협약에 규정한 사항으로 폐지(안 제12조)

3. 참고사항

- 광주광역시서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 제3차서구규제개혁위원회심사결과 : 가감 11250-10820(2000. 7. 22)

광주광역시서구조례 제 호

광주광역시서구화정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증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서구화정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사용제한) 전염성 질환자 및 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6조(사용료 납부 및 감면)</p> <p>① (생략)</p> <p>② (생략)</p> <p>1. <u>생활보호대상자</u></p> <p>2. (생략)</p> <p>3. (생략)</p> <p>4. (생략)</p>	<p>제6조(사용료 납부 및 감면)</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1. <u>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u></p> <p>2. (현행과 같음)</p> <p>3. (현행과 같음)</p> <p>4. (현행과 같음)</p>
<p>제7조(사용제한) <u>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u></p> <p>1. <u>전염성 질환자 및 정신질환자</u></p> <p>2. <u>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u></p> <p>3. <u>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자</u></p> <p>4. <u>기타 구청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u></p>	<p>제7조(사용제한) <u>전염성 질환자 및 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u></p>
<p>제12조(변상책임)</p> <p><u>복지센터 사용중 시설물 등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수탁자가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액을 변상하여야 한다.</u></p>	<p style="text-align: center;">〈삭 제〉</p>